

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(당첨 예정자, 예비자)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,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. (인터넷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-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,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(www.applyhome.co.kr)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·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,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, 해당 기관에서는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(일반)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[2026.07.10.(금) 예정]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홈페이지(오픈 예정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청약업무수행기관(한국부동산원)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
I

공급개요 및 분양일정

- 공급위치 :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681번지 일원
-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28~29층 10개동 총 1,307세대 [일반분양 1,307세대 중 기관추천(일반) 특별공급 122세대]
- 주택형 : 84㎡A, 84㎡B, 99㎡A
- 입주예정시기 : 2029년 9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- ※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

구 분		대 상 세 대			
		84A	84B	99A	합계
공급 세대수		943	280	84	1,307
국가유공자(국가보훈부)등		16	5	-	21
장기복무 제대군인		13	4	-	17
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		14	4	-	18
중소기업 근로자		21	6	-	27
장애인	경상남도	16	5	-	21
	부산광역시	8	2	-	10
	울산광역시	6	2	-	8
합 계		94	28	-	122

※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,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일정(예정)

구분	일정(예정)		비고
입주자모집공고	2026.07.10.(금)(예정)	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
건본주택 개관	2026.07.10.(금)(예정)		• 장소 :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
특별공급 접수일자	인터넷 청약	2026.07.20.(월)(예정) 09시~17시30분	•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앱
당첨자 및 동·호수 발표	2026.07.28.(화)(예정)		• 확인방법 -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*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
계약 기간	2026.08.10.(월)~08.12.(수)(예정)		• 장소 :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100

- ※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※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, 정보취약계층(고령자, 장애인 등)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(은행창구 접수 불가) 허용 됩니다.(접수시간 : 10:00~14:00)
- ※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■ 특별공급 자격요건

구분	내용			
공급기준	<p>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,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. 다만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</p>			
	구분		처리방법	
	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	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	
	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	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	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	
	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	모두 부적격 처리		
<p>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 ■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 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.</p>				
무주택 요건	<p>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주 요건</p>			
청약통장 자격요건	<p>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기관추천(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</p>			
	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			
	구분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(거제시, 경상남도 거주자)	그 밖의 광역시 (울산광역시 거주자)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
	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250만원	3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400만원	600만원	
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700만원	1,000만원	
모든면적	500만원	1,000만원	1,500만원	
<p>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</p>				

※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.

■ 당첨자 선정 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[미신청시 당첨자선정, 동·호 배정 및 계약 불가]
- 대상 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: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기관추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됩니다.
- ※ 해당 기관 추천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,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